'25년 국가유공자 생활보조보훈수당 지원계획(안)

□ 지원근거

○ 「국가보훈기본법」 제19조(예우 및 지원), 「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(복지지원)

□ 사업개요

○ **사업개시** : 2016년 7월

○ **지원대상** : 차상위 계층(기준중위소득 50%) 이하인 국가유공자* (선순위 유족 포함)

*** 지원대상 국가유공자**

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 대상자이거나
②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 대상자이거나
③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 대상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[1] 이하인 자 (기준중위소득 50% 이하)

◆ 2025년 기준중위소득(보건복지부 기준) (단위 : 원, 월)

구분	1인 가구	2인 가구	3인 가구	4인 가구	5인 가구	6인 가구
기준중위소득 50%	1,196,007	1,966,329	2,512,677	3,048,887	3,554,096	4,032,403

○ **예 산 액** : 7,200백만원(도비 100%)

○ **지원내용** : 대상자 1인당 월 10만원 지원

○ **신청 및 지원절차**

- 대상자 신청 및 소득조사 후 시·군 보훈부서에서 대상자에게 계좌 입금
- 지급기준일(15일)까지 신청 건은 당월 내 지급, 16일 이후 신청 건은 익월 소급하여 지급

도	⇨	국가유공자	⇨	시·군	⇨	시·군	⇨	시·군
계획 수립 및 시군 보조금 교부		본인 및 대리수령인 신청서 제출 【읍면동】		생활보조 보훈수당 신청내역 접수, 소득·재산조사 의뢰 【보훈업무담당부서】		소득인정액 조사 및 확인 【통합조사 부서】		지급대상자 관리 및 지급 (부적합자 관리 등) 【보훈업무담당부서】

□ 행정사항

○ 2025년 도비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(1, 4, 7, 10월)

○ 분기별 시·군 집행실적 조사(3, 6, 9, 12월)

---

1) 자활참여자, 본인부담의료비경감자,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수령자, 한부모가족(소득인정액이 기준소득 52% 이하 포함),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차상위 계층

붙 임 | **지급 유의사항 및 시군 협조 사항**

□ 지급 시 유의사항

○ **지급 제외** : 시설에 입소하여 생계비를 부담하지 않는 자

○ **대리수령 시** : 채무불이행[2], 치매 또는 거동불편 등으로 본인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대리수령인(배우자, 직계혈족, 3촌 이내 방계혈족 및 실질적 보호자[3]) 계좌에 입금(서식 3)

○ **국가유공자 사망 시** : 사망일에 속하는 달 전액 지급

- 사망일이 속하는 달 익월분이 착오 지급된 경우 환수
- 사망일이 속하는 달 계좌가 말소된 경우 실질적 보호자 확인 후(가족관계증명서 등) 지급. 다만, 사망일 기준 30일까지 신청이 없거나 연락 불가시 미지급

○ **전출·입 시**

- **(도내 시·군 간)** 지급기준일(15일) 주소지 관할 시·군에서 지급하되, **전출지 시·군에서 전입지 시·군에 통보**(서식 4)
- **(타 시·도 전입)** 지급기준일(15일) 이전 전입자에 한하여 전입일이 속하는 달 신청시 전액 지급(당월 지급)
- **(타 시·도 전출)** 지급기준일(15일)까지 거주자에 한하여 전출일이 속하는 달 전액 지급(익월분 착오 지급시 환수 대상)

○ **소득인정액 변경 시(국가유공자 신규 지정시 포함)**

- 소득확인조사 : 1년 2회(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대상자 조사시 병행) 실시하되 언론보도, 민원발생 등 필요시 수시로 실시 가능

※ 지급대상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되, 시·군 통합조사팀과 협조 추진

- 대상자 책정 **有·無** : 책정될 경우 자격변동이 있는 속하는 달부터 지급, 책정제외된 경우 익월부터 미지급
- **매월** 기존 생활보조보훈수당 **지급 대상자**에 대한 **자격 유지·변동 여부**를 **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확인 후 수당 지출(부적합자 제외)**

---

2) 채무불이행자 증명 : 행복e음상 압류방지통자 계좌 등록 기록 캡쳐하여 신청서에 첨부로 갈음
3) 실질적보호자 확인서류 : 주민등록동본,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증명서 등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서류

□ 시·군 협조사항

○ 생활보조보훈수당 지급현황 분기별 보고(붙임 2)

※ 매 분기 말일 기준 제출(서식 변경됨)

○ 도내 시·군간 전·출입 시

- 전출지 시·군에서 전입지 시·군에 수당지급 내역 통보(서식 4)

○ 「경기도 국가유공자 생활보조보훈수당」은 소득산정 제외

※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2항(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참조)

○ 개인정보보호 관련 명단 관리 철저

○ 보훈단체 홍보 및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에 안내문(붙임 1) 비치·홍보

○ 설·추석 명절 위문금 수령자(생활보조보훈수당 미수령자)에게 사업 안내 메시지 발송

별첨 안내문, 신청서 서식 등 각 1부. 끝.